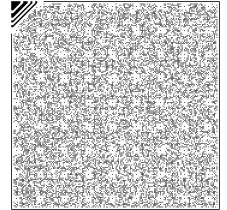


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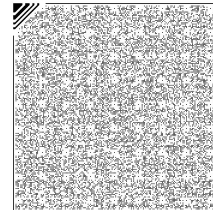


수신 관내 사업장(교육기관)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협조 요청

1. 귀 사업장(기관)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“방역관리자 업무 교육(실천편)”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
3. 교육내용은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및 관련자가 사업장 내 각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속 이행 및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7분 35초 분량입니다.

※ 다운로드 주소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안전보건자료실 > ‘방역관리자’ 검색
4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“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”과 “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5. 따라서 사업장(교육기관)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, 부산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(☎ 051-850-64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근로감독관 권은정 근로감독관 이경열 팀장 대결 2021. 3. 12. 과장 전결
허효수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5657 (2021. 3. 12.) 접수

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6 (연산동 1470-1 부산지방노동청) / <http://moel.go.kr/busan>

전화번호 051-850-6491 팩스번호 051-851-7424 / ej1123@korea.kr / 비공개(5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